

서울지방법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나26596 임금
원고, 항소인 김○○○○○ (○○○○○○○-○○○○○○○○)
서산시 ○○○○○동 ○○○○○○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위대영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가 @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권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5. 1. 선고 2001가소22880 판결
변론종결 2002. 10. 16.
판결선고 2002.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6,736원 및 이에 대한 2001. 5.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5.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다가 1998. 1. 31. 해촉되었는데, 위촉 당시 제 수당은 피고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다(위촉계약서 제3조).

나. 그 무렵 피고회사의 수당규정은, ① 모집수당으로 매월 보험료 입금시마다 효율성적의 8/1,000을 익월에 지급하고, ② 효율수당으로 효율성적의 8/1,000을, 해촉시에는 수급자에게 효율성적의 4/1,000(방문 수금의 경우)나, 2/1,000(비 방문 수금의 경우)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1996. 10. 이전 모집분까지 시행하여 오다가, 1996. 11. 이후 모집분부터는, ① 모집수당으로 환산월초의 300%를 계약 성립시 1회에 한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② 효율수당으로 효율월초의 300%를, 해촉시 수급자에게 효율월초의 100%(방문 수금의 경우)나, 50%(비 방문 수금의 경우)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¹⁾.

1) 당해 보험 가입의 가치를 일정한 금전적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것을 환산성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산성적에 월 단위 등의 분급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등으로 산출한 것이 효율성적이고, 환산

다. 그리고, 위 모집수당 가운데 보험모집인이 해촉된 후에도 잔여모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촉자 본인의 청구시 효율성적의 8/1,000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6. 9.말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위촉되기 전인 1996. 10. 1. 이후의 모집분부터 시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그에 의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위 위촉계약서와 그에 따라 적용되는 피고회사의 수당규정은 피고회사가 보험모집인을 위촉할 때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어서 약관이라 할 것이고, 또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제 수당은 보험 모집 후의 그 유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보험모집인의 보험 모집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 것인데,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1996. 9.말경 모집수당 가운데 해촉된 경우에도 지급하여 오던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당규정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변경된 수당규정은 보험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가사 위 위촉계약서 및 수당규정이 약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모집인과의 위촉계약은 유상의 위임계약 유사의 혼합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수당규정을 변경한 것은 보험모집인의 주된 급부의무인 보험의 모집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당 지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월초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일정 평가액으로서,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가입금액의 규모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평가, 책정되는 위 환산성적과 달리 월 납입 보험료의 규모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평가, 책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환산월초에 위와 같은 분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효율월초이다

감축한 것으로 위촉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수당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효율성적의 8/1,000의 비율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 없이 수당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와 같이 보험모집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그 변경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위촉계약서 및 수당규정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회사가 다른 계약 당사자인 다수의 보험모집인들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수당규정이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후에 피고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변경 전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오다가 수당규정이 위와 같이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위 약관이 불공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변경되기 전의 수당규정과의 비교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만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위 주장이 원고와의 구체적 권리관계를 떠나,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수당규정의 변경은 변경 전에 비하여 보험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취지로서, 변경된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다투는 것이라면 이러한 추상적인 판단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주된 급부는 보험의 모집활동이고 따라서 위 수당도 모집활동에 대한 대가(반대급부)가 주된 것이라 하더라도{원고는 따라서, 해촉되어도 그 보험계약이 위촉중인 다른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위촉중에 보험을 모집한 보험모집인이 그 대가(수당)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촉계약 당시의 수당 규정에 의하면, 보험모집을 한 경우 그 보험모집인은 환산월초의 300%(1996. 10. 이전의 모집분이라면, 효율성적의 8/1,000)의 비율에 의한 모집수당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을 한 보험모집인이 해촉되어 위촉중인 보험모집인이 이를 이관받아 단지 보험료를 수금하는 등으로 기 모집된 보험계약의 유지활동만 한 경우에도, 그 보험모집인은 위 유지활동에 대한 대가로 효율월초의 100%나 50%(1996. 10. 이전의 모집분이라면, 효율성적의 4/1,000나 2/1,000)의 비율에 의한 효율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위촉중에 원고 스스로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다만 그 유지활동만 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가 이제는 해촉되어 모집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규정에 의한 잔여모집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그 대가인 모집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촉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덧붙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촉 후에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 약관조항이나 위촉계약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일응 위 약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거나(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6조),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한 것이지(민법 제137조), 그로 인해 곧바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변경 전 수당규정에 의한 효율성적의 8/1,000의 비율에 의한 잔여모집 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복 _____

 판사 함윤식 _____

 판사 송석봉 _____